

#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

## 인권보호 조례안

### 심사보고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: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

#### 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년 4월 12일, 윤종호 의원 외 23명

나. 회부일자: 2024년 4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4년 4월 24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· 답변, 토론, 의결)

#### 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: 윤종호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공교육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,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여건을 마련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,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교육감 및 학교의 장 책무(안 제3조)
-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시행계획 수립(안 제4조)
-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 등(안 제7조)
-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#### 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경형)

##### 가. 제안취지

- 본 조례안은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공교육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,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여건을 마련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.

##### 나.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정의와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.
-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, 학습권 보장, 인권보호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학교운동부지도자,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해 규정함.

##### 다. 종합의견

- 경상북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, 2021년 학생선수 3,795명 중

699명(18.4%)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했고, 2022년 학생선수 3,817명 중 793명(19.4%)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했으며, 2023년 학생선수 3,784명 중 681명(18.0%)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였음.

- 특히, 중학교 학생선수의 경우 29.5%에서 31.8%정도의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여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실정임.
- 또한,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인권침해도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,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,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,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공교육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,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여건을 마련하여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에 필요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합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.
- 아울러,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교별 기초 학력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학생선수 인권보호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본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 5. 질의 및 답변 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